

- 2026년 제1회 목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 정 분 야	임용예 정 직 급	기 간	인 원	직 무 내 용	근 예 부	무 정 서
목포청년 센터누리 운영매니저 (직업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2년 이내 (주35시간)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창업 관련 일자리(직업) 및 심리 상담 서비스 ◦ 청년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운영 ◦ 맞춤형 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운영 관리 ◦ 청년공간 운영(대관관리 등) 및 관련 행정 업무 지원 ◦ 협력기관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 관련 긴급업무 추진 등 	청 년	인 구 과
공영버스 작영사업 운전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1년 이내 (주35시간)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운행시간과 정해진 버스노선, 배차 계획서 등에 따른 목적지까지 버스 운전 및 승객 운송 ◦ 차량입고, 수입금납입, 출발시간·도착시간·주행 등에 대한 운행 정보 입력 및 관리 ◦ 대기근무(대체운행 및 사고 차량 인계, 정비 보조, 현금계수 등) ◦ 연료, 타이어, 냉각수 및 차량의 각 부분을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수리 의뢰, 차량 내부 청결 관리 	대 중	교 통 과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직제·기구가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27호)
-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성별	제한 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연 령

- 목포청년센터누리운영매니저: 18세 이상(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
- 공영버스 운전원: 20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 ~ 65세 미만(1962. 1. 1. 이후 출생)
- ※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자격요건,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복무 규정 의거

다. 지 역

- 목포청년센터 누리 운영매니저·공영버스 운전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자
- ※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3항

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직급	자 격 기 준
목포청년 센터누리 운영 매니저 (직업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청년사업부서, 공공기관, 법인, 청년시설(센터) 등에서 청년 정책, 센터운영, 일자리, 사업기획 및 발굴, 프로그램 운영, 직업상담 등 청년 업무 관련 근무한 경력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자 - 청년 지원 사업 특성상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정의하는 청년(18세~45세) - 청년 관련 사업 및 분야에 행정·운영 경험이 있는 자 (홍보·콘텐츠 제작, 상담, 커뮤니티 모임, 청년공간 운영 등) - 사회복지관련학과, 상담관련학과, 청소년복지관련학과, 교육학 등 학위 취득자 - 청년·청소년시설(센터), 복지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div>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주·야간/주말 근무 가능한 자 1. 1종 대형운전면허증 및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단순 차량 운행경력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운전 경력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소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서 현재 재직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div>

-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심사 시에만 반영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가. 근무조건 ※모든 분야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조건 변동 가능

임용예정분야	근무조건
목포청년센터 누리 운영매니저(직업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10:00 ~ 18:00) ※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야간·주말근무 탄력조정, 필요시 초과근무 실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1대당 2인 1조 편성 (오전1명, 오후1명) 일 9시간 내외 (근무 7 + 식사 1 + 초과근무 1) ※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필요시 초과근무 실시 월 22일 내외 (2일 근무 · 1일 휴무)

나.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경력,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임용분야	직급	상한액	하한액	비고
목포청년센터 누리 운영매니저(직업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9급 상당)	47,843천원	27,000천원	주35시간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9급 상당)	47,843천원	27,000천원	주35시간

- ※ 시간선택제는 임기제공무원 해당 직급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주당 35시간)하여 책정
-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기 간	응시원서 접수 기 간	시 험 일 정		
		구 분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26. 3. 16.(월) ~ '26. 3. 27.(금)	'26. 3. 25.(수) ~ '26. 3. 27.(금)	서류전형	'26. 4. 6.(월)	'26. 4. 10.(금) 限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발표 및 공고는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나. 접수기간 : 26. 3. 25.(수) ~ '26. 3. 27.(금)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임기제 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7급 7천원, 8·9급 5,000원) 동봉
 -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 등기우편 후 확인 전화 필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9. 제출 서류

- ※ 서류제출 시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스테이플러 편철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공통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1】

나. 응시원서 1부 【별지2】

- ▶ 응시수수료(목포시 수입증지): 7천원(7급), 5천원(8~9급)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 안내(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 2)

- |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가족관계증명서 |

다. 이력서 1부 【별지3】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 첨부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불가능한 경력 및 응시자격 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경력 기재 금지

라.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별지4】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 2매 【별지5】

바.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6】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7】

아.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소변동, 개명, 병역사항 포함

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기간" 발급 (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중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담당업무와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별지8】 추가 제출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날인) 및 연락처 기재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민간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며,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개별사항	㉠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 원본지참	버스운전원
	㉡ 운전경력증명서 1부	버스운전원

카.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 원본지참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타.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조회기간 '전체경력')

- 인터넷발급(정부24)증명서는 문서확인번호 및 타임스탬프(진본확인)가 있는 서류 제출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①운전면허경력, ②법규위반, ③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우와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점 감점**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61-270-8626)
 -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목포청년센터 누리 운영매니저	청년인구과	☎061-270-8774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대중교통과	☎061-270-4489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기본사항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응시요건	비 고
홍길동	ex)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ex)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ex)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자	

□ 제출서류

목 록		제출 여부
공통 사항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개명, 병역사항 포함)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 근무시간·기간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담당업무와 응시 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지 제8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반드시 추가 제출 ※ 민간경력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개별 사항	10. 자격증(면허증) 사본 ※ 원서접수 시 원본지참	
	11. 운전경력증명서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 제1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 목포시 수입증지 붙이는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 제1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함
(예 :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분야 등)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함
6. 수입증지 : 목포시 민원봉사실에서 목포시수입증지 날인
- 5급(가급) 이상 : 1만원, 6·7급(나·다급)·연구사 :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 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계획,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크기 11포인트)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계획,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크기 11포인트)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분야 :
○ 성 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관련 경력·실적, 무슨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직무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함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관련 경력·실적, 무슨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직무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목포시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병역사항,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근 무 경 력						
기관명				기관성격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기관 ex)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등	
기관주소				제출용도	지방임기제공무원시험 응시용	
입사일자	년	월	일	채직기간	년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
퇴사일자	년	월	일		월	
근 무 세 부 내 역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급(위)	비고	
20XX.XX.XX. ~ 20XX.XX.XX.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해당업무 기재 (상 세 기 재)					
"	"					

발급자	○ ○ ○ (인)
담당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직인,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시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시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2조(시험의 공고) ②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①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64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범위 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제104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획 수립) ①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계획서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계획, 임용요건(근무시간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임용계획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임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①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임용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을 따른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근무한 경우는 3년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는 2년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2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이 경우 심의회에 포함되는 외부 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위촉되어야 함)

④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⑤ 임용령 제17조제1항 및 인사규칙에서의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07조(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구성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하여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인 자)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령 제45조의 임용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험위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임용시험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력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 ⑥ 면접시험 당일 면접위원 불참 등을 대비하여 예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횡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횡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3]

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계급	임용자격
3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학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학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등 학위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0. 3. 10.>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적용대상공무원	구분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제3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5. 1. 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69,663
6급(상당)	86,606	57,708
7급(상당)	70,782	50,272
8급(상당)	62,096	44,296
9급(상당)	54,678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 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

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삭제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 · 7급 · 연구사
전 문 대 학 졸 업 자	7급 · 8급 · 지도사
고 등 학 교 졸 업 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⑧ 삭제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